항만안전특별법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3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 맹성규·박성준·이병훈

소병훈 · 정성호 · 장철민

윤재갑 · 송옥주 · 신정훈

오영환 • 어기구 • 문진석

김진표 • 우원식 • 김상희

백혜련ㆍ허 영ㆍ노웅래

김영배 · 김영호 · 이용빈

유동수 · 홍기원 · 정태호

장경태 · 서동용 · 위성곤

김영주 • 이성만 • 김원이

최인호 · 임호선 · 윤준병

정일영 · 이용선 · 허종식

정춘숙 · 인재근 · 서영교

최강욱 의원(40인)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한 청년이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 검수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희생된 청년은 안전장비나 안전교육을 제공받지 않고 작업현장에 투입됨. 또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

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항만운송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의무 및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 도록 함(안 제8조).
- 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 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 검하게 함(안 제14조).
- 사.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 아.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자.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항만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운송 근로자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항만운송 근로자"란 도급 · 용역 ·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

- 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과 그 주변에서 인명피해나 재 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

-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할 것

-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
- 4.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작업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할 것
-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의 관계자에게 제공할 것
- 6. 항만운송사업장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
-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기 전에 안전한 작 업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항만운송 참여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근로자가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④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사

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1.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2.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 당자의 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 제9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항만 운송 근로자를 작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항만운송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항만운송 근로자는 제9 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항만운송 근로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항만운송 근로자는 항만운송 참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 제11조(항만안전관리계획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에서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항만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만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결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항만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승인의 방법·절차와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항만안전관리계획
 - 2.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 3. 제14조에 따른 항만 현장 점검 현황
 - 4. 제15조에 따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 5. 제16조에 따른 항만안전사고 조사 결과
 - 6. 그 밖에 항만안전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하 "안전관리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 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등 항만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지표의 기준·내용 및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 점검 및 항만안전사고 신고 · 조사

제14조(항만 현장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점검결과를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점검결과에 따른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 시정명령 등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및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본부 및 지방청 소속 항만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안전확인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및 직무수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요원은 안전감독관의 지휘를 받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상태를 파악해 안전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감독관은 이를 보고 받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구체적인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주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항만안전사고 신고)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병원이송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 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병원이송 등 조치사항
 - 4. 인적 · 물적 피해현황
 - 5. 사고발생 사업장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6. 향후 조치계획
- 제16조(항만안전사고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기관이수사 또는 조사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사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사업의 일시 정지를 명령받은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그 대책이 항만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사업의정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항만운송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 제17조(근로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경우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한다.
 - ② 보험·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험·공제의 가입절차, 보상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험·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제19조(보험·공제 및 보험급여액의 감액) 제17조에 따른 보험·공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는 항만운송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0조(시정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1조(사업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운송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11조에 따른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과징금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자
-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서 배제하지 아니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보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조직을 두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4. 제1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 행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를 작업현 장에 종사하게 한 자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 작업을 지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항만운송 참여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